문서번호

수 신 제 언론사

발 신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이하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

제 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청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날 짜 2017. 2. 9. (총 18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청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 진행 개요
- 사회 : 서중희 변호사 (대리인단 간사)
- 사안 경과 및 블랙리스트 규탄 : 장지연(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 블랙리스트 소송의 의미와 향후 진행방향 : 조영선 변호사(대리인단 부단장)
- 소송의 주요 내용 발표 : 전민경 변호사
- 참여 문화예술인 발언(소송참여 취지)
  - 오성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참여 문화예술인 1인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였고, 작년 12월 12일 김기춘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3. 나아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원고 모집을 진행하였고, 2월 9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4. 이번 소송에는 각계의 문화예술인이 각자의 의지와 분노를 모아 참여 신청을 하였고 461명이 원고로 참여하였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고의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공무원 개인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예정입니다.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하고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경우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청구액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소송 원고는 전체 피해자 중 일부이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전체 내역이 밝혀진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5. 또한 블랙리스트에는 개인의 성명, 직업 외에, 정치적 견해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 김기춘 등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불법 수집, 처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별도로 위 가담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6. 2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 제기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발표하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끝.

* 첨부
- 소장・고발장・주요 피해사례 요약 각 1부

2017년 2월 9일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첨부1.

소장(요약)

○ 원고 : 고○○ 외 460

○ 피고 : 1. 대한민국

2. 박근혜

3. 김기춘

4. 조윤선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 영화진흥위원회

7. 한국 콘텐츠 진흥원

○ 청구취지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0.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정치권력이 블랙리스트와 같은 잣대를 가지고 문화 예술을 정복하고 복속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것임, 허망한 것임을 명징하게 밝히고자 함.

피고 박근혜과 김기춘 등이 저지른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피고 박근혜를 비롯한 피고들에 대하여 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주도·가담한 자 또한 사법적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그 선례[1]를 남기고자 함임.

1) 참으로 안타까움과 분노가 여미는 것은 최소한 2년 넘게 행해지는 블랙리스트 작성, 이를 통한 문화예술계에 대한 불이익·차별 등을 보고도, 문화체육부 공무원 그 누구도 이에 맞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묵인·조장·가담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최순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양심고백'하였으나, 이는 최순

1. 당사자

가. 원고

정부가 주도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이하 '블랙리스트'라고 함)에 기재되었거나,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 사업 배제 등을 당한 예술가들

나. 피고들

1) 대한민국 :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검열을 자행했던 공무원들의 사용자
2) 박근혜 : 대통령. 2016. 12. 9. 국회에서 헌법 제111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48조 1호, 국회법 제130조에 따른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3) 김기춘 : 2013. 8. 5. ~ 2015. 2. 22.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 사무처리 및 소속 공무원(4비서관 및 10수석실)을 총괄하여 지휘, 감독하는 지위.
4) 조윤선 : 2014. 6. ~ 2015. 5.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의 지휘·감독 아래 국회, 정당 업무 및 행정과 치안에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며, 정무비서관실을 담당·지휘. 2016. 9. 6.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고 함) 장관.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6)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조직

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변화된 정세에서의 처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위헌·위법한 국정농단에 맞선 단 한명의 '직업적 양심'에 충실한 공무원조차 없다는 것인지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7) 한국콘텐츠 진흥원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

2. 블랙리스트 사건의 개요 (보다 상세한 것은 첨부한 '소장' 참조)

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

▷ 2013. 2. 박근혜 대통령 취임

▷ 2013. 8.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2015. 2.까지 재직)

▷ 2014. 4. 16. 세월호 참사 발생

▷ 2014. 4. 이후 청와대 및 비서실 주도로 정부비판적 문화예술인 명단 작성 관리

▷ 2014. 6. 조윤선 대통령 정무수석 취임(2015. 5.까지 재직)

▷ 2014. 7. ~ 8.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 국민소통비서관이었던 정관주 등이 주도하여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전달. 문체부는 예술정책과 소속 사무관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 지시.

▷ 2014. 10. 2. 및 2015. 1. 2.자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 :

- 2014. 10. 2.자 업무일지 : '長'(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으로 표시된 자의 지시사항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ex) 다이빙벨, 파주, 김현"
- 2015. 1. 2.자 업무일지 : "영화계 좌파성향 人的 네트워크 파악 必要(經濟)"

[실제로 2014 파주 북소리축제 프로그램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홍명희 문학제는 보훈단체의 반발('파주의 대표적인 축제에 참여하는 많은 관람객들에게 월북까지 한 사람을 위한 행사를 치른 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에 의하여 취소되었음]

▷ 2015. 3. 최철 문체부 정책보조관 '현안 참고 자료'를 작성해 장애인 연극단체 '다빈나오' 대표의 정치성향 보고

▷ 2016. 10. 도종환 국회의원,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발언. 2016. 5. 29.자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문화예술위원장) (기금 지원) 책임심의위원을 선정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원해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참 말씀을 드리기 힘든데요. 심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율적인 심의가 원만하지 않다”

▷ 2016. 11. 한국일보 - 문화계 블랙리스트 1만여명 보도

▷ 2016. 12. SBS -블랙리스트 일부 명단 보도

▷ 2017. 1. 23. - 문체부 대국민 사과문 발표

▷ 특검 피고 김기춘, 조윤선 및 김종덕 등 구속 기소

▷ 최근 문체부 소속 공무원들과 국가정보원 소속 정보관들이 수시로 교류하였다는 사실, ‘진보 성향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보고서가 있다는 사실 등 국가정보원 또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보도

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보유.이용 - 블랙리스트의 내용과 관리 현황

▷ 2016. 10. 12.자 한국일보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자 594명,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문화인 6,517명, 박원순 지지 선언 문화인 1,608명

▷ 2016. 12. 28.자 SBS “문체부 블랙리스트 입수“

교수, 시인, 안무가 등 예술계 인사 48명, 영화사나 극단 43개 단체 등

▷ 2017. 1. 19.자 동아일보 “박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2016. 5.경 박근혜, “좌파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문체부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 이에 따라 신동철 대통령정무비서관 주도로 지원 배제 인사 80여명의 명단 작성.

3. 블랙리스트의 불법적 활용 사례 -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지원 배제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문화창작기금 선정' 배제 - 2015. 9. 11.자 한겨레 신문

▹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는 올해 문학 장르별 우수 작품에 지원하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선정에서 특정 작가들의 배제를 요구하고, 심의위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직접 결과를 조정

▹ 연극, 무용 등 문화예술 분야 작품을 지원하는 '창작산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유명 연출자에게 직접 작품 제작 포기를 종용 => 이윤택 작가 등 특정 작가를 거론하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심의위원들에게 요구했고, 그 결과 당초 선정된 102명 중 32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 박근형 작가에게는 지원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여 박 작가가 지원신청을 포기

나.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 벨' 검열 사례

▹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이 예정되어 있던 세월호 생존자 구조작업과 관련한 정부 비판 내용을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차단 노력. ㉮ '다이빙벨' 상영 시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 여당의원으로 하여금 영화제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를 성토하게 하여 부산국제영화제 운영주체를 압박[2], ㉰ 문체부는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 '다이빙벨을 상영할 경우 국고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 ㉱ 서병수 부산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만약 예정대로 상영한다면 '부산시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는 다 하겠다'고 함.

2) 김회선, 박대출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2014. 10. 7.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고가 지원되는 영화제에 국격이 안 맞는 영화과 상영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다이빙벨 같은 영화는 제재해야 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서용교 의원은 "정치 편향적인 영화가 상영돼 부산국제영화제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며 "국고 지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한다", "작품성이 떨어지는 영화들이 노이즈 마케팅하곤 한다"고 발언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빙 벨'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자 김기춘 등은 미리 세워 두었던 계획에 따라 감사원, 서병수 부산시장으로 하여금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하여 유례없는 지도점검 및 감사 시행.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용관 집행위원장에게 사퇴 압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우호단체로 하여금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고발하도록 조치

▷ 2016. 3. 문체부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선정대상에서 '다이빙 벨'을 상영한 민간 독립영화전용관인 인디스페이스와 아리랑시네센터, 대구 오오극장 등 민간 운영 전용관들 제외

다. SBS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례

▷ 강릉씨네마테크(권정삼)에 대해 문화예술기부활성화(조건부기부금)사업 지원을 2013년에는 2,500만원 지원하였으나, 2014년에는 지원하지 않았음. "단체를 이끄는 박광수 사무국장이 문화예술인 269인 진보성당 지지선언"

▷ 일상예술창작센터(최현정) : '2013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 '깨끗한 시장' 1,500만원 지원. 2014년에는 지원 안함. "콜트 등 노동자 2,000일 투쟁 지지"

라. 기타

▷ 문체부 소속 사무관이 지원 배제 명단을 들고 전남 나주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사를 찾아가 지시사항 전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속 직원이 특정 연출가가 세월호와 관련되어 있어서 곤란하다는 이유로 해당 작품을 심사에서 탈락시키도록 심사위원에게 강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교육기관이 강연자가 국정교과서 반대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강연 취소

▷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이 전 문체부 장관 유진룡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근거하여 관련 인사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반대하는 문체부 공무원의 해임 지시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헌법 제10조, 제17조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블랙리스트 작성, 배포 및 관리행위는 정보 주체인 원고들 모르게 원고들의 정치 성향 및 대외 활동 등을 조사한 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이용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이고,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반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결정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등). 따라서 원고들이 한세월호 관련 서명 또는 문재인 지지 서명 등 각 행위가 행위 당시 언론 등에 공개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범위까지 누구에게 공개할 것인지는

원고들이 결정할 권리가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그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문서화하고 관리한 이상 그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나. 양심의 자유 침해

피고들이 원고들의 세월호 관련 성명 발표나 야당 정치인 지지 선언 등 특정한 정치적 성향과 신념을 이유로 이들을 차별, 배제하기 위하여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 이용하였으므로, 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함.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을 포함(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 결정, 1998. 7. 16. 선고 96헌바35결정)하는 개념으로, 사상의 자유도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장. 특히 양심 형성 및 결정의 자유는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논리적·철학적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유이고, 이를 위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불안, 억압, 공포가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함.

다.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은 예술창작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예술창작의 자유와 창작한 예술품을 예술품으로 보호하고 이를 일반대중에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예술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의하여만 제한할 수 있음(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미술, 영화, 문학 등 분야에서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들로서

각종 국가보조금 및 지원금을 받을 경우 생계 고민을 덜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지원금을 이용해 전시·공연·보급을 할 수 있어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보다 수월하게 펼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원고들이 예술의 자유를 향유하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신청한 정부 지원의 각종 창작지원금, 보조금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 없이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관리를 하고 위 보조금 등을 받지 못하게 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의 지원금 수급을 막아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고 창작·전시·공연·보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

나아가 피고들의 행위는 문화예술인들로 하여금 소위 '좌파'로 분류되어 공권력에 의해 감시, 지원배제 등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정치적 성향과 신념, 사상을 외부로 표현하는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고 검열하게 하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를 침해하는 위법행위.

라. 소결

이처럼 피고들이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행위, 이를 이용하여 사업 지원을 배제한 행위는 원고들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자유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이미 법원은 ① 피고가 중앙정보부, 노동청 등을 통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 배포 및 관리하고 취업방해 등을 한 사건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행위가 노동기본권, 직업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 12. 21.선고 2012나2202 판결), ② 보안사가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에서도 개인 정보의 수집 및 관리행위가 자기정보통제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음(서울고등법원 1996. 8. 20. 선고 95나44148 판결, 상고기각 확정).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국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 및 지원사업 배제 등에 이용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이며,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이유도 모른 채 예술창작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손해도 산정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우선 일부금으로 100만원을 청구하고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

원고들이 실제로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위법한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됨으로 인하여 그 지원 가능하였던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였음. 이에 대해서 추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

6. 결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검열 사태는 우리 헌법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평등권을, 제19조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21조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22조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에 의해 모든 헌법상의 권리가 한낮 종이위의 한가한 글씨로 전락했음.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람.

첨부2.

고발장(요약)

1. 고발사건 개요

고 발 인　　문화연대(등록번호:2010-82-60121)

피고발인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박명진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혐의자 8인

1. 고발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 혐의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
>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 제 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3.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1. 고발 사유

1) 현재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블랙리스트는 개인의 성명, 직업, 정치적 견해(00당

지지, 세월호시국선언, 00후보 지지 등) 등이 기재되어 있음.

2)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감정보'이며, 이는 당사자의 동의나 법령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공공기관이 처리(수집, 보유, 관리, 이용 등)할 수 없는 정보임.

3)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은 공공기관으로 이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음.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등 피고발인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들로 '민감정보'의 불법 수집, 이용에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고 가담한 자들임. 따라서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공동으로 위반한 범죄혐의가 있음.

4)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이 공공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관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는 현재 알려진 블랙리스트 기재 1만 여 명이 모두 피해자가 되는 중대한 범죄임.

6) 이런 연유로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블랙리스트 작성 그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정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고발함.

7) 특검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여 일부 피고발인을 기소 한 바 있음. 블랙리스트의 존재 등 그 실물은 특검에서 이미 확보한 상태이므로, 엄격한 법적용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첨부3

주요 피해사례(요약)

박근형(연출작가)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창작산실이라는 연극지원 사업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직원들이 이미 심사가 완료되어 선정된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라는 작품의 심사결과를 번복해줄 것을 심사위원들에게 종용하고, 심사위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직접 본인을 찾아와 포기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며 서명을 받았음. 한편 주목받는 젊은 국악그룹 '앙상블 시나위'의 '소월산천' 공연 시작 2주 전에 국립국악원 담당자가 공연에 포함된 박근형 연출가 협업 배제를 요구하였고, 결국 공연이 취소됨. 김해숙 국립국악원장이 블랙리스트 관련 검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시인함.

김성장(시인)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는 올해 문학 장르별 우수 작품에 지원하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대상자였으나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어 탈락함(도종환 의원 사실 확인)

현기영(작가) -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 서명 및 2012년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사유로 블랙리스트 기재

김서경/김운성(미술가) - 베트남에 '피에타'상 설치하려고 했는데 베트남측의 반대로 설치하지 못함. 한국정부측(외교부)이 베트남 정부에 이들을 전복세력이라고 하여 베트남 정부가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음.

임옥상(미술가)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개관전 '시대정신'전(2013. 11. 13.~2014. 4. 27.)에 출품 전시된 '하나 됨을 위하여' 작품을 청와대 관계자가 사전 검열하여 불가 판정을 하여 이후 전시할 수 없었음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대표 도정일) - 대표가 문재인 멘토단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이관 받아 진행하던 '문학나눔' 사업이 2013년 한해만 진행되고 갑자지 중단됨. 이후 이 사업은 한국출판문학산업진흥원으로 이관되어 '세종도서'사업으로 진행됨. ② 매년 정부보조금으로 진행되던 'book-start 사업'이 2015년 갑자기 지원중단 됨. 그런데 이 사업은 일선 현장에서 '국민독서진흥회(일응 화이트리스트 단체로 추정)가 동종·유사명칭으로 사업진행 함.

서울프린지네트워크(대표 오성화)(연극) - 서울프린지네트워크(대표 오성화)명의로 사업명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5'로 2014년 하반기에 2015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 분야(최소 5천만원 정도 지원됨)에 지원 신청함. 심사시기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프린지 동의 없이 임의로 '다원예술'분야(최대 1,500만원정도)로 옮겨서 심사한 후 탈락시킴. 당시 담당공무원이 관련 경험이 전무한 자로 갑자기 바뀌었고 그 공무원이 프린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니 안 받아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함. 이후 2016년도부터 지원사업에 '다원예술'항목이 사라짐.

박근혜는 대통령 후보시절 조윤선을 동행해 프린지 축제현장에 방문하였고 언론에 홍대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후보로 홍보함. 당시 박근혜측이 프린지측과의 공식미팅을 요청했으나 프린지측이 거부한 사실이 있고, 박근혜 당선 후 청년위 출범 기획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로 연락이 왔으나 거절함.

프린지 페스티벌은 1998년부터 시작된 축제로 지속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을 받아왔음. 초기에는 '다원예술'로 지원 받았으나 규모가 커지자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 분야로 지원하게 되었고 지원금이 늘어나게 되었음. 그런데 '2014년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행사'에서 권력과 세월호를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를 사용한 이후 2015년부터 예산지원이 배제됨.

SBS 2017. 1. 17.자 ['우수한 작품' 거듭 보고에도..청 "지원 절대 안돼"] 뉴스에 의하면 '융복합분야[2015 예술위 공모사업]' 제목 아래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5'에 대

하여 ‘대표 개인의 활동이 문제되며, 행사자체는 내용, 인지도, 파급 효과 측면에서 국내최고수준’, ‘지원 중단하면 반발과 부작용이 예상’ 된다고 적혀있지만 제외 되었다고 보도하였음.